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

의안번호	11-70
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9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행정정보 공표규정 마련 및 조례제정 필요성 대두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공표 규정의 명시 및 정보공개목록,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을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함

나. 행정운영과정에 구민참여 기회 확대

- 행정정보공표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알권리 총족 및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하여, 부패없고 투명한 마포구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보공개목록을 작성 (안 제5조)

- 1) 공공기관에서 생산 접수된 정보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.

나. 행정정보의 공표제도 명시 (안 제6조)

- 1) 행정정보공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

다.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 (안 제9조, 안 제12조)

- 1)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한 5명 내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라.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규정 (안 제11조)

- 1) 구청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, 공개범위,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

- 2)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
- 3)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

3. 주요 토의과제

“없음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항, 제7조, 제8조제1항, 제12조제1항 ~ 제5항, 제23조제4항
- 2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1조, 제17조제1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반영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1. 7.22 ~ 8.10. (20일간)
- 2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(감사담당관) : 원안동의
- 3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구인”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2. “공개”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구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교부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.
3. “행정정보”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사무로써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구(구본청, 동, 보건소 및 구의회 사무국)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정보공개의 원칙) 구가 보유·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5조(의무) ① 구는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·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구는 정보목록을 작성·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구는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

제6조(행정정보의 공표) ①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 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 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 4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,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

제7조(공개방법)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·신청하게 하거나 사본·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,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.

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.

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

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제8조(비용부담)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, 그 금액 및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장 정보공개심의회

제9조(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·운영) ① 구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

제11조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구청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, 공개범위,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

2.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
3. 그 밖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

제12조(심의회의 운영)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의견청취)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,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4조(위원의 책무)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.

제5장 보칙

제15조(다른 제도와의 관계) 이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, 공고, 공시, 예고 또는 등본, 초본,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심의회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되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.